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17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17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단5687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변론종결 2022. 6. 16.

판결선고 2022. 7.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가단5687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172,053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들을 더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C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므로 이는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사해행위인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송금한 돈이 C가 차용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거나 피고 부부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등 일견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이는 외에는 다른 법적 원인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수, 판사 류창성, 판사 정회일

별지

송금일자	금액
4. 17.	4,240,000
4. 25.	3,722,000
4. 27.	2,247,000
	2,255,000
5. 15.	1,532,974
5. 25.	3,210,000
5. 29.	2,822,000
6. 14.	2,861,276
6. 26.	4,233,776
	2,297,506
7. 25.	3,489,404
7. 27.	2,617,937
8. 16.	2,836,923
8. 25.	3,572,401
8. 28.	2,531,279
	1,704,927
9. 25.	2,304,155
10. 25.	612,253
10. 27.	830,000
12. 27.	1,276,312
2018. 4. 16.	1,200,000
4. 25.	2,823,059
4. 27.	1,966,838
	1,000,000
5. 2.	541,000

송금일자	금액
2018. 6. 25.	2,537,734
7. 25.	2,568,857
7. 27.	237,442
합계	64,172,053

